

검 토 보 고 서

【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

1. 충청남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3.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23
4.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7



충청남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3년 6월 19일 편삼범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3년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418호
- 제 출 자: 편삼범 의원
- 제출일자: 2023년 6월 19일
- 회부일자: 2023년 7월 3일

2. 제정이유

- 경계선 지능으로 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능력 향상과 학교생활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안 제5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 (안 제6조) 진단검사
- (안 제7조) 사업
- (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경계선 지능”,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해 정의함
 - 안 제3조(책무)에서는 충청남도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는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을 규정함
 - 안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에서는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① 추진목표 및 방향, ② 지원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③ 교원연수 및 학부모 교육, ④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⑤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함

- 안 제6조(진단검사)에서는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진단하고 파악하기 위하여 지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기와 방법 및 대상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고, 진단검사 결과 경계선 지능에 포함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결과를 안내하여 전문가를 통한 상담, 전문검사 및 지원기관 정보제공 등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7조(사업)에서는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① 경계선 지능 학생 실태조사, ② 경계선 지능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전문검사, ③ 경계선 지능 학생 및 학부모 상담, ④ 학습, 정서지원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 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습능력 향상과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자 제정한 것으로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됨

- 다만 경계선 지능 학생의 조기 맞춤형 지원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제고 및 지원 예산 수립을 위한 면밀한 검토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진단검사) 및 안 제7조(사업)에 따라 진단검사 및 사업을 추진 시 경계선 지능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부족 및 타인의 시선 의식에 대한 우려로 회피 또는 기피 할 수 있으니 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세부적인 검토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5개 교육청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참고] 시·도교육청 조례 제개정 현황

지역	자치법규명	제개정일자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2017. 04. 21.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03. 29.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2023. 04. 03.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2023. 05. 10.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2023. 06. 09.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2023. 6. 14.,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라.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2023. 6. 14., 감사관)

마. 행정규제심사: 해당되지 않음 (2023. 6. 14., 충청남도교육청)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이란 지적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에 있는 지능을 말한다.
2. “경계선 지능 학생”이란 경계선 지능으로 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지원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3. 교원연수 및 학부모 교육
4.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5.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
6. 그 밖에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진단검사) ①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진단하고 파악하기 위하여 지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기와 방법 및 대상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진단검사 결과 경계선 지능에 포함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결과를 안내하여 전문가를 통한 상담, 전문검사 및 지원기관 정보 제공 등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①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 지능 학생 실태조사
2. 경계선 지능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전문검사
3. 경계선 지능 학생 및 학부모 상담
4. 학습, 정서지원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8993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⑤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⑥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진단 검사), 제7조(사업)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3조(책무)는 조항의 내용이 제7조(사업)에 구체화 되어있고,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는 충청남도교육청 자체로 계획수립이 가능하여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그 외 조항(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8조)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대상

-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사업비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2023년은 세부 계획수립, 예산편성 등을 감안하여 비용추계 기간에서 제외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안 제7조제1항의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사업 중 실태조사,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은 세부 계획이 미수립되어 있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실태조사 대상 학년,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영역 등의 세부적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주기의 변동 가능성은 있음

- 안 제6조의 진단검사 및 상담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전문검사 및 학생·학부모 상담 실시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전제하여 추계함

다.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771,250천원(연평균 354,25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 (안 제7조제1항 1호)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의심·추정학생 전문(진단)검사 (안 제7조제1항 2호)		36,250	36,250	36,250	36,250	36,250	181,250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안 제7조제1항 3호)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350,000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안 제7조제1항 4호)		198,000	198,000	198,000	198,000	198,000	990,000
	소계(b)		354,250	354,250	354,250	354,250	354,250	1,771,250
□ 총 비용(b-a)			354,250	354,250	354,250	354,250	354,250	1,771,250

3.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담 당 관
예산분석팀장
주 무 관

예산정책담당관

박재용

홍종식

☎ 041-635-5207(budget20@korea.kr)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3년 6월 19일 윤희신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3년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419호
- 제 출 자: 윤희신 의원
- 제출일자: 2023년 6월 19일
- 회부일자: 2023년 7월 3일

2. 제정이유

-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유익하게 활용하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높이는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안 제8조) 업무의 위탁
 -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탁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안 제8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업무위탁 범위를 교육 및 연수에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범위가 확대되었는바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2023. 6. 12.,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라.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2023. 6. 12., 감사관)

마. 행정규제심사: 해당되지 않음 (2023. 6. 12., 충청남도교육청)

바.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교원 연수 등)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중 “구축 할” 을 “구축할”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6조(교원 연수 등) ①</u>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p> <p><u>②</u>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u><신 설></u></p>	<p><u>제6조(교원 연수 등)</u>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p> <p><u>제8조(업무의 위탁)</u>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u>제8조(협력체계 구축)</u>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p>	<p><u>제9조(협력체계 구축)</u> ----- ----- ----- ----- 구축할 -----.</p>
<p><u>제9조(시행규칙)</u>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u><삭 제></u></p>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미디어(Media)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을 이해하고 정보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
3. 교육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 방안
5.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6. 교육·연구 및 조사
7.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의 추진)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디어 정보 관련 연구·조사 지원
2. 교육 방법 및 교재 개발·보급
3.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
4.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원 연수 비용
3.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조례 개정안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8조)
 - 안 제8조(업무의 위탁)는 업무위탁의 범위를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의 교육 및 연수에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로 확대하여 조를 신설하는 것이나,
충남교육청에서 이미 '2023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으로 추가적인 재정 수반 요인은 없음
 - 외부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으로 충남지방경찰청과 '찾아가는 정보통신윤리교육',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미디어리터러시교육·정보통신윤리교육 스마트프로젝트사업' 을 기 추진 중에 있음
 - 조문의 삭제 안(현행 제6조제2항 및 제9조)은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재정수입의 순감소 또는 재정지출의 순증가 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그 밖의 조항은 띄어쓰기 정비, 조문의 이동 등 조례 자구를 정비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 기 추진 사업 현황 】

○ 사업명/부서 : 스마트교육추진-미디어리터러시교육 / 미래인재과

(단위: 천원)

사업내용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정보통신윤리교육	15,000	15회, 충남지방경찰청 협력사업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위탁용역)	80,000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학생 교육 및 교원 역량강화 연수 운영	9,960	21회, 500명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이룸학교 운영 지원	100,000	10교(교당 10,000천원)
합 계	204,960	

자료: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담 당 관
예산분석팀장
주 무 관

예산정책담당관

박재용

홍중식

☎ 041-635-5207(budget20@korea.kr)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3년 6월 27일 신순옥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3년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428호
- 대표발의: 신순옥 의원
- 발의일자: 2023년 6월 27일
- 회부일자: 2023년 7월 3일

2. 제정이유

- 코로나19 이후 줄어들었던 청소년 흡연·음주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최근 SNS 사용이 활발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범죄가 급증하면서 흡연·음주와 더불어 마약 또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
- 이에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강화와 예방교육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제3조) 교육감 책무
- (안 제4조)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 (안 제5조·제7조) 유해약물 예방을 위한 교육과 교직원 등 연수
- (안 제9조) 유해약물 예방교육 자문위원회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책무)에서는 충청남도교육감은 마약류 등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4조(예방교육계획)에서는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① 기본목표 및 방향, 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③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④ 학생·보호자 및 교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⑤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⑥ 예방교육 사업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함

- 안 제5조(예방교육)에서는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 학교의 장은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6조(지원)에서는 교육감은 예방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7조(연수)에서는 교육감은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직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8조(학생상담)에서는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사용 및 피해 학생 발견 시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상담·치료 등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9조(자문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은 예방교육 자문위원회를 두어 ① 예방교육 계획 수립·시행, ② 학교별 예방교육 추진 실태 점검 및 이에 관한 사항에 자문을 할 수 있고, 위원회 구성 인원, 위원장 선출 방법, 위촉위원 임기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0조(실태조사 및 연구)에서는 교육감은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11조(위탁)에서는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안 제12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홍보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을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책무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청소년들의 흡연, 음주 문제와 유해약물(마약 등)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각종 일탈행위, 폭력, 자살, 성범죄 등으로 이어져 사회문제로 까지 확대될 수 있어, 청소년보호법¹⁾ 및 학교보건법²⁾ 등 상위

1) 청소년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의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법령에서도 음주, 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약물에 대한 예방교육 등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직원 및 보호자 연수, 학생상담 및 치료 등 각종 사업 추진 시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세부적 시행방안과 지원기준 수립 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9개 교육청에서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참고] 시·도교육청 조례 제개정 현황

지역	자치법규명	제개정일자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2019.04.17.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2019.09.30.
강원	강원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2020.04.03.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2021.04.14.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2021.09.23.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2021.09.24.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2022.04.11.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2022.10.15.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유해약물 피해 예방 교육 조례	2022.12.22.

2)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2023. 6. 13.,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라.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2023. 6. 14., 감사관)

마. 행정규제심사: 해당되지 않음(2023. 6. 12., 충청남도교육청)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각급학교에서 마약류 등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말한다.
3. “유해약물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유해약물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마약류 등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교육계획)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4. 학생·보호자 및 교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5.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6. 예방교육 사업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교육감이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교육감은 예방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연수) 교육감은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직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학생상담)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사용 및 피해 학생 발견 시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상담·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예방교육 계획 수립·시행

2. 학교별 예방교육 추진실태 점검 및 이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교육감이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실태조사 및 연구) 교육감은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홍보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법률 제17784호, 2020.12.29.,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② (생략)

③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 청소년 보호법[법률 제18550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의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67호, 2022. 4. 5., 일부개정]

제3조(청소년유해약물의 결정기준) 법 제2조제4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청소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쳐 판단력 장애 등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신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2. 청소년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신체발육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3. 습관성, 중독성, 내성(耐性) 또는 금단증상 등을 유발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상적인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 학교보건법[법률 제18640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의 여건 및 특색을 고려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제1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의 조치를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③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고, 학생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요 청 인 : 신순옥 의원

담 당 : 박재용 예산분석팀장
홍종식 주무관

접 수 일 : 2023. 6. 21.(수)

회 신 일 : 2023. 6. 27.(화)

내용문의 : 041-635-5207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목 차

I. 비용추계 요약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5조(예방교육) 제1항, 제7조(연수), 제8조(학생상담), 제9조(자문위원회), 10조(실태조사 및 연구), 제12조(협력체계 구축)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4조(예방교육계획)는 안 제10조와 연계하여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함을 전제하여 비용 미발생
- 안 제5조(예방교육계획) 제2항은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한 것으로 비용 미발생
- 안 제6조(지원)는 예방교육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안 제5조의 예방교육에 대한 비용추계 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 안 제11조(위탁)는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사업을 자체 추진함을 전제로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 그 외 조항(안 제1조, 제2조, 제3조)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대상

-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운영 사업비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조례 심의 및 공포, 예산편성, 세부계획 수립 등을 감안하여 2024년부터 추계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자문위원회 인원은 15명으로 하되 내부위원 6명, 외부위원 9명으로 가정
- 자문위원회 회의는 연 2회 개최, 회의 시간은 회당 2시간 이내로 가정
- 실태조사 및 연구(안 제10조)는 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하도록 한 부산·광주·경남교육청 조례를 참고하여 3년에 한 번씩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다.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 ≙ 610,060천원(연평균 122,012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운영) 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안 제5조제1항)	14,960	14,960	14,960	14,960	14,960	74,800
	교직원 및 보호자 연수 (안 제7조)	49,852	49,852	49,852	49,852	49,852	249,260
	학생상담 및 치료 지원 (안 제8조)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자문위원회 운영 (안 제9조)	1,800	1,800	1,800	1,800	1,800	9,000
	실태조사 및 연구 (안 제10조)	82,000	0	0	82,000	0	164,000
	협력체계 구축 (안 제12조)	12,600	12,600	12,600	12,600	12,600	63,000
	소계(b)	171,212	89,212	89,212	171,212	89,212	610,060
□ 총 비용(b-a)		171,212	89,212	89,212	171,212	89,212	610,060

3.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담 당 관

예산분석팀장

주 무 관

예산정책담당관

박재용

홍종식

☎ 041-635-5207(budget20@korea.kr)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 요소

○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운영 사업비

2. 세부 추계 내역

○ 총 비용 ≙ 610,060천원(연평균 122,012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운영)_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안 제5조제1항)		14,960	14,960	14,960	14,960	14,960	74,800
	교직원 및 보호자 연수 (안 제7조)		49,852	49,852	49,852	49,852	49,852	249,260
	학생상담 및 치료 지원 (안 제8조)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자문위원회 운영 (안 제9조)		1,800	1,800	1,800	1,800	1,800	9,000
	실태조사 및 연구 (안 제10조)		82,000	0	0	82,000	0	164,000
	협력체계 구축 (안 제12조)		12,600	12,600	12,600	12,600	12,600	63,000
	소계(b)		171,212	89,212	89,212	171,212	89,212	610,060
□ 총 비용(b-a)			171,212	89,212	89,212	171,212	89,212	610,060

가.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 74,800천원 (5년간)

1) 산출 전제

- 2023년 부산교육청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교육자료개발’ 예산액 준용

2)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74,800	14,960	14,960	14,960	14,960	14,960

나. 교직원 및 보호자 연수 ≍ 249,260천원 (5년간)

1) 산출 전제

- 경남교육청 입찰공고(20230347096-00) 예산액으로 산정함
- ☞ ‘2023 청소년 흡연(유해약물)예방 학부모지원단 양성·운영 용역’

2)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교직원 및 보호자 연수	249,260	49,852	49,852	49,852	49,852	49,852

다. 학생상담 및 치료 지원 ≍ 50,000천원 (5년간)

1) 산출 전제

- 2023년도 충청남도(건강증진식품과)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사업비 준용
- ☞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및 재활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2023년 예산액은 10,000천원 임(대상 인원 20명)

2)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학생상담 및 치료	5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라. 자문위원회 운영 ≍ 9,000천원 (5년간)

1) 산출 전제

- 지급대상: 외부 위촉 위원 9명
 - ☞ 「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 인원 15명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 위원 수(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4 이내로 구성)를 제외한 외부위원 수
- 참석수당(1명) 단가: 1회당 100,000원
 - ☞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법정위원회 참석수당 단가 기준
- 회의 횟수: 연 2회
 - ☞ 2023년도 부산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자문위원회 수당 예산 산출기초(지급 횟수) 준용

2) 세부 산출내역

- 수당지급: 100,000원 × 9명 × 2회 = 1,800,000원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자문위원회 운영(수당)	9,000	1,800	1,800	1,800	1,800	1,800

마. 실태조사 및 연구 ≍ 164,000천원 (5년간)

1) 산출 전제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찰공고(20230333728-00) 예산액으로 산정함
 - ☞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설계 및 시범조사’

2)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실태조사 및 연구	164,000	82,000	0	0	82,000	0

바. 협력체계 구축 ≍ 63,000천원 (5년간)

1) 산출 전제

- 충남교육청 ‘교육균형발전협의체운영’ 사업 2022년도 예산액 준용

2)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협력체계 구축	63,000	12,600	12,600	12,600	12,600	12,600

[참고] 비용 산출전제 관련 자료

○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서(2023년)

□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정책) 보건급식 (단위) 보건관리 (세부) 학교보건관리

(단위 : 천원)

사업내역	목	예산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산출기초	금액		
다. 학교마음건강자문 의사운영			3,000		
1) 강사수당(특별강사2)	210운영비	300,000원×10회=	3,000		
15. 보건교육지원			180,970	2,240	178,730
[교육국 생활체육건강과]			180,970	2,240	178,730
가. 약물오남용예방교육			144,800		
1) 위원회참석수당(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예방교육자문위원회)	210운영비	100,000원×8명×2회=	1,600		
2) 업무협의회	230업무추진 비	20,000원×16명×2회=	640		
3) 교육자료개발			14,960		
가) 개발수당			5,040		
(1) 기본	210운영비	50,000원×12명×6회=	3,600		
(2) 초과	210운영비	20,000원×12명×6회=	1,440		
나) 검토수당			700		
(1) 기본	210운영비	50,000원×5명×2회=	500		
(2) 초과	210운영비	20,000원×5명×2회=	200		
다) 업무협의회	230업무추진 비	20,000원×17명×8회=	2,720		
라) 자료제작	210운영비	10,000원×650부=	6,500		
4) 강사수당	210운영비	100,000원×638교×2회=	127,600		

○ 경상남도교육청 입찰공고

□ 2023 청소년 흡연(유해약물)예방 학부모지원단 양성·운영 용역

「2023. 청소년 흡연(유해약물)예방 학부모 지원단 양성·운영」 용역 제안요청서

2023. 3.



경상남도교육청
<http://www.gne.go.kr>

I 사업개요

1. 사업명: 2023. 청소년 흡연(유해약물)예방 학부모 지원단 양성·운영 용역
2.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3. 사업금액: 금49,852,000원(금사천구백팔십오십이만원, 부가가치세포함)
4. 계약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총액)입찰, 2단계[규격(기술)가격 동시] 입찰
5. 사업목적
 - 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체계적인 흡연(유해약물)예방교육 위한 학부모 연수 실시로 청소년의 흡연(유해약물)예방교육의 중요성 인식 향상
 - 나. 찾아가는 흡연(유해약물)예방 특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청소년 흡연 및 유해약물 사용 시도율 저하
6. 주요 사업 내용
 - 가. 흡연(유해약물)예방 학부모 기본연수 운영
 - 나. 흡연(유해약물)예방 학부모 심화연수 운영
 - 다. 흡연(유해약물)예방 학생 맞춤형 체험 특화프로그램 운영
 - 라. 교육 만족도 조사, 사업 결과 보고서 작성, 사업 보고회 개최

○ 충남도청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사업비 현황

□ 충남도청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사업비

[건강증진식품과 2023년도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사업비 현황]

구 분	예 산 액	통 계 목	지원내용
계	10,000,000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20명)	10,000,000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검찰의 마약류 중독자 판정자에 대한 치료, 재활프로그램 지원

2023년도 e-호조 예산서(제1회 추정) 기준

○ 법정위원회 참석수당 단가 지침

□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Ⅲ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하는 기준 경비

6. 위원회 참석수당

-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한 수당

구 분	단위	단 가	비 고
법정위원회 참석수당	일당	◦ 기본 : 100천원 ◦ 초과 : 50천원	※ 기본 : 2시간 초과 : 2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주1)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경우 참석수당 지급 불가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찰공고

□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설계 및 시범조사

과제명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설계 및 <u>시범조사</u>
------------	--

2023. 3.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I | 개요

□ 연구 과제명 :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설계 및 시범조사

□ 연구 목적

- 청소년의 마약류 노출, 사용 및 중독심각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 마약류 사용과 관련한 관리방안 도출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 조사문항 개발
 - 대상자별 심층인터뷰 및 조사도구 제시
 - 조사표 관련 자문회의 진행
- 청소년 마약류 관련 온라인 시범조사 시행

□ 소요 예산: 금 82,000,000원(금팔천이백만원, 부가세 및 회계정산비 포함)

○ 2022년도 ‘교육균형발전협의체운영’ 예산

□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본예산)

(정책) 교육행정일반 (단위) 정책기획및비상계획 (세부) 교육정책기획관리

(단위 : 천원)

사업내역	목	예산 금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다. 교육균형발전협의체운영		12,600		
1) 일반수용비	210운영비	4,000		
2) 검토수당	210운영비	2,000		
3) 시설임차	210운영비	2,000		
4) 여비	220여비	3,600		
5) 협의회	230업무추진비	1,000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3년 6월 28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440호
- 제출자: 교육감
- 제출일자: 2023년 6월 28일
- 회부일자: 2023년 7월 3일

2. 제안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취득

(단위: m², ton, 백만 원)

순	안 건 명	재 산 현 황				비 고
		종류	면 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1	천안희망초등학교 교사동 증축안	토지	1,129.0	553.0	3,048.0	기부채납
		건물	2,404.7	5,718.0	5,718.0	

※ 기준가격 및 추정금액

종류	구분	기준가격	추정금액(소요액)
토지	취득, 처분	◦ 개별공시지가	◦ 가감정, 감정가격, 보상가격 등
건물	매입, 매각	◦ 주택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 가감정, 감정가격, 보상가격 등
	신축, 증축 등	◦ 건축비 등 사업비	◦ 건축비 등 사업비

4. 검토 의견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근거

○ (근거)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³⁾과 처분⁴⁾에 관한 계획 수립

○ 심사 대상

⇒ (취득·처분)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 1건당 기준가격 취득 20억원, 처분 10억원 이상인 재산이거나,
- 토지의 경우 1건당 취득 6,000㎡, 처분 5,000㎡ 이상인 재산

⇒ (변경) 의회 의결을 받은 후 아래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업목적 또는 용도 변경
- 취득·처분 공유재산의 위치 변경
- 토지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 초과 증감된 경우

□ 천안희망초등학교 교사동 증축안

○ 사업기간: 2023. 10. ~ 2024. 2.(1년 1개월)

○ 위 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998번지 일원

3) 취득 :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

4) 처분: 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

- 규 모: 토지 1,129㎡, 건물 2,404.7㎡(지상5층, 지상3층, 총 2개동)
- 학교현황: 학급수 37학급(특수 3학급 포함), 학생수 843명(특수 15명 포함)
- 사업금액: 총 8,766백만 원(토지비 3,048백만 원, 건축비 5,718백만 원)

◇ 사업비 분담: 사업시행자 부담 1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계	8,766	6,000	2,766	0	
기부채납	8,766	6,000	2,766	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5.03.01.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증축	1,064	15	44	3	2024.10.	1,129	2,404.7	3,048	5,718	8,766

- (필요성) 천안희망초등학교는 2023학년도 현재 37학급 843명이나, 2025년 공동주택 입주로 인해 중기학생배치계획상 2025학년도 47학급 1,079명 규모가 예상되어 유입학생 배치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 전까지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 (추진경과)

- 2021.12.27. 롯데캐슬더두정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2021.12.31. 두정힐스테이트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2022.04.05. 학교시설 기부채납 협약 체결
- 2022.06.22. 두정힐스테이트 공동주택건설사업 착공
- 2022.07.25. 롯데캐슬더두정 공동주택건설사업 착공
- 2023.05.08. 2023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재정투자심사위원회(원안가결)
- 2023.05.12. 2023년 제2회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검토의견)

- 학교 인근 공동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해 2025년도에는 천안희망초등학교 학생수가 현재 843명에서 236명이 증가한 1,079명이 예상됨에 따라 교사동 2개동(보통교실 14실, 교사연구실 4실, 특별교실 4실)을 증축하는 것은 과밀학급 해소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지난 제345회 회기 중 천안희망초등학교 교사동 증축안은 교육가족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였던 것으로 이후 집행부에서 검토한 사항 또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5. 첨부 자료

가.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총괄표)

나.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다.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추계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총괄표

○ 취득

- 토지

(단위: m², 백만 원)

순	안 건 명	소 재 지	면 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비 고
1	천안희망초등학교 교사 동 증 축 안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298-49번지 등 8필지	1,129.0	553.0	3,048.0	기부채납

- 건물

(단위: m², 백만 원)

순	안 건 명	소 재 지	면 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비 고
1	천안희망초등학교 교사 동 증 축 안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998번지 일원	2,404.7	5,718.0	5,718.0	기부채납

천안희망초등학교 교사동 증축안

1. 사업기간: 2023. 10. ~ 2024. 10.(1년 1개월)
2. 위 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998번지 일원
3. 규 모: 토지 1,129㎡, 건물 2,404.7㎡(지상5층, 지상3층, 총 2개동)
4. 학교현황: 학급수 37학급(특수 3학급 포함), 학생수 843명(특수 15명 포함)
5. 사 업 비: 총 8,766백만 원(토지비 3,048백만 원, 건축비 5,718백만 원)

◇ 사업비 분담 : 사업시행자 부담 1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계	8,766	6,000	2,766	0	
기부채납	8,766	6,000	2,766	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5. 3. 1.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증축	1,064	15	44	3	2024.10.	1,129	2,404.7	3,048	5,718	8,766

6. 사업목적(필요성)

- 천안희망초등학교는 2023학년도 현재 37학급 843명이나, 2025년 공동주택 입주*로 인해 중기학생배치계획상 2025학년도 47학급 1,079명 규모가 예상되어 유입학생 배치를 위한 교육시설 확충 필요

* 공동주택: 천안두정힐스테이트 (997세대 / 2025.02. 입주 예정)

천안롯데캐슬더두정 (584세대 / 2025.10. 입주 예정)

-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증축부지 부족으로 동측 부지를 추가 취득하여 기존 교사동과 연결하는 형태로 교사동 2개 증축
- 2022. 4. 5. 천안희망초등학교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토지 및 증축동 ‘학교시설 기부채납 협약’ 체결
(천안교육지원청 행정과-6541)
- 2025년 공동주택 입주 전까지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 및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

7. 사업내용

- 토지 취득

(단위: m², 백만 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298-11	대지	429	209	1,787
	298-45	대지	42	18	116
	298-49	대지	122	59	822
	298-76	대지	23	13	29
	298-99	공장용지	12	7	37
	298-109	공장용지	78	45	46
	298-110	공장용지	191	118	121
	298-112	대지	232	84	90
합 계(8필지)			1,129	553	3,048

○ 교사동 증축

- (A)동 증축 규모

(단위: m²)

구분	연면적	증축내용
1층	57.94	필로티 주차장(11면)
2층	411.44	보통교실 3실, 교사연구실 1실 등
3층	411.44	보통교실 3실, 교사연구실 1실 등
4층	411.44	보통교실 3실, 교사연구실 1실 등
5층	354.54	보통교실 3실, 교사연구실 1실 등
계	1,646.80	

- (B)동 증축 규모

(단위: m²)

구분	연면적	증축내용
1층	246.9	보통교실 2실 등
2층	255.5	특별교실 2실 등
3층	255.5	특별교실 2실 등
계	757.9	

8. 추진경과

- 2021.12.27. 롯데캐슬더두정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천안시 주택과-48508)
- 2021.12.31. 두정힐스테이트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천안시 주택과-49548)
- 2022.04.05. 학교시설 기부채납 협약 체결
(천안교육지원청 행정과-6541)
- 2022.06.22. 두정힐스테이트 공동주택건설사업 착공
(천안시 주택과-2536)
- 2022.07.25. 롯데캐슬더두정 공동주택건설사업 착공
(천안시 주택과-30496)
- 2023.05.08.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재정투자심사위원회(원안가결)
- 2023.05.12.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위치도

1. 위 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998번지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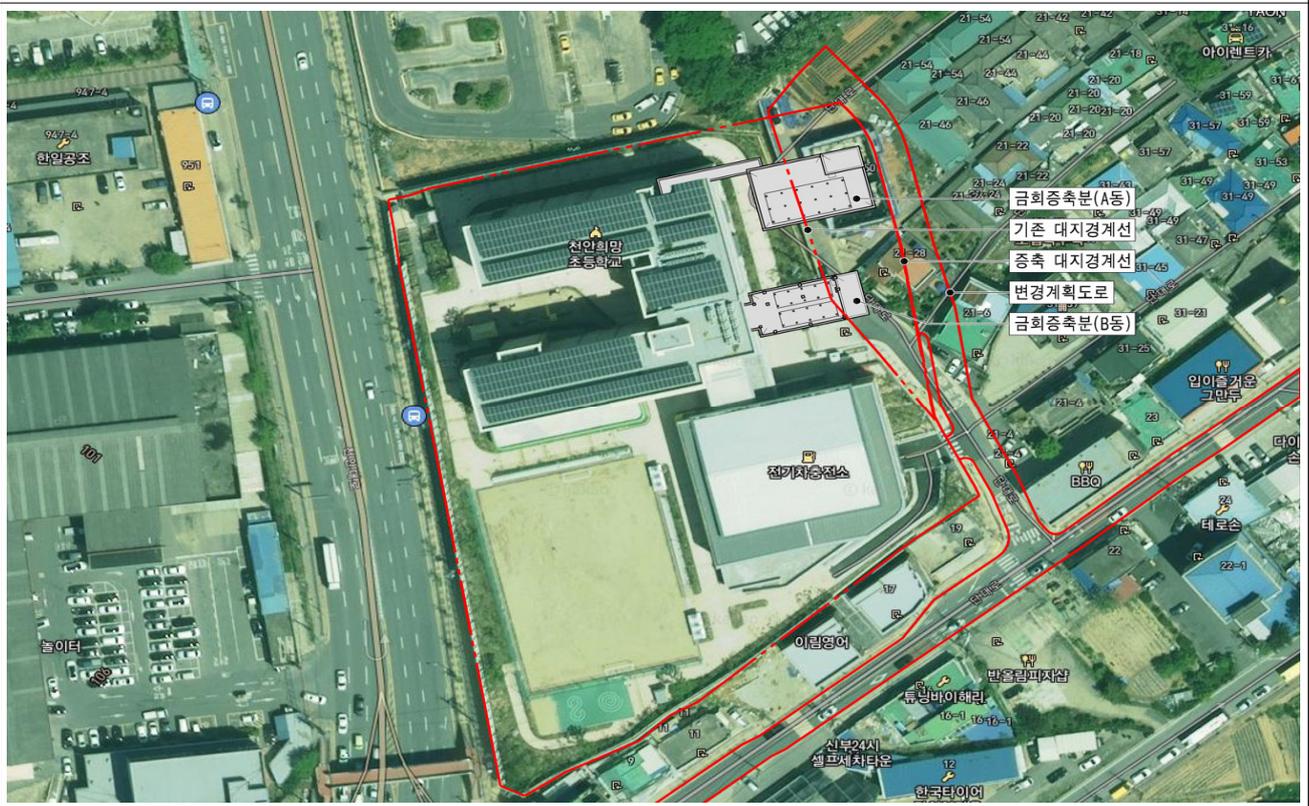
2. 위성사진



3. 토지 취득 및 교사동 증축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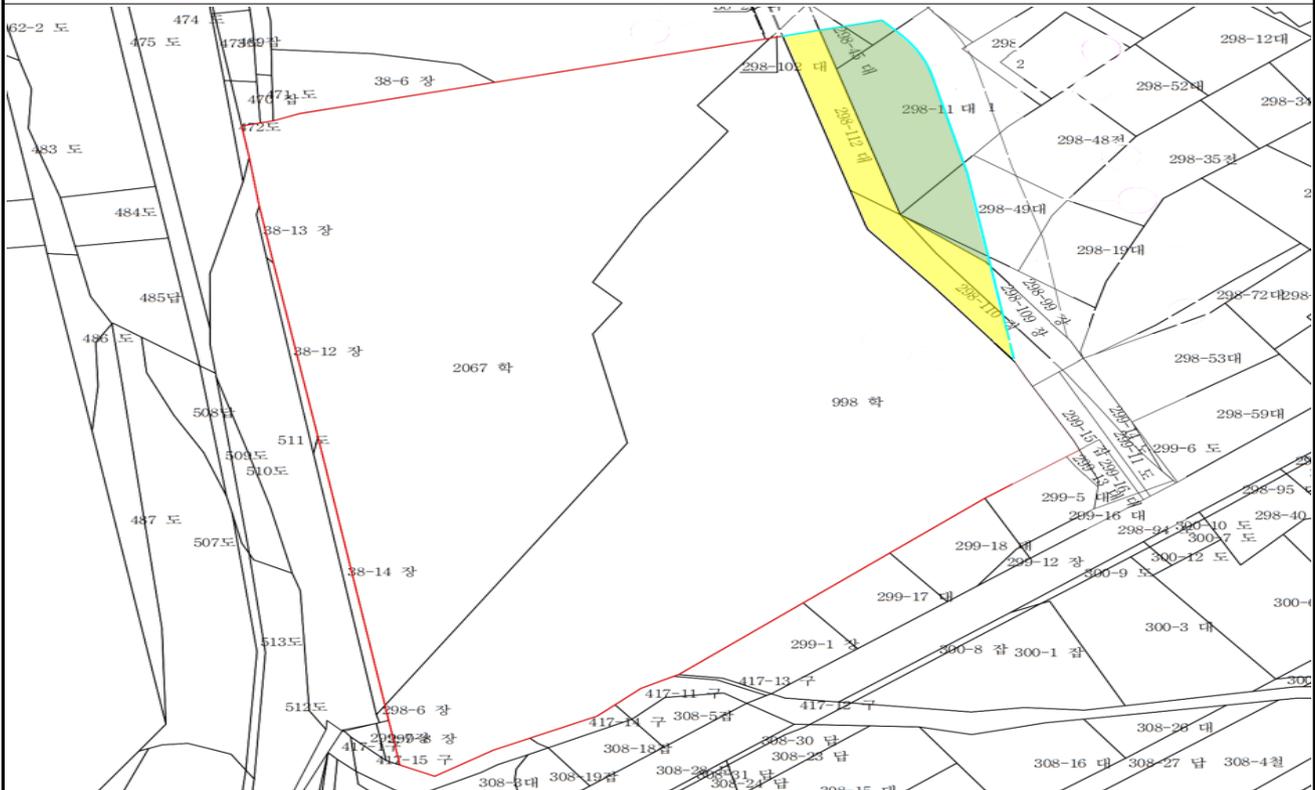
4. 증축 완료 후 도시관리계획도로 예정



5. 조감도(증축 후)



6. 취득 토지 위치도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 ⑥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 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 가. 단독주택:「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 나. 공동주택:「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천안희망초등학교 교사동 증축안의 공유재산 취득

2. 비용 발생 요인

- 토지 취득 및 교사동 증축

3. 관련조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4. 비용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 1건당 기준가격 20억 원 이상 재산(토지, 건물)과 6,000㎡ 이상 토지
- 추계 결과
 - 사업시행자(기부채납) 8,766백만 원
- 재원조달방안
 - 사업시행자(기부채납) 8,766백만 원
 - 2023년도 6,000백만 원, 2024년도 2,766백만 원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6.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국 재무과장 김은정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백만 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세 입	6,000	2,766	0	0	0	8,766
천안희망초등학교 교사동 증축안	6,000	2,766	0	0	0	8,766
세 출	6,000	2,766	0	0	0	8,766
천안희망초등학교 교사동 증축안	6,000	2,766	0	0	0	8,766
재원 조달	6,000	2,766	0	0	0	8,766
의존 재원	소 계	0	0	0	0	0
	보통교부금	0	0	0	0	0
	특별교부금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전 입 금	0	0	0	0	0
	기 부 금	0	0	0	0	0
자체 수입	소 계	0	0	0	0	0
	자체수입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사업시행자 (기부채납)	6,000	2,766	0	0	0	8,766